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3. 6.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2월 16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2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5년 3월 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2013년 이후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된 후 폐기물처리비가 급상승하여 이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 현실화가 절실한 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낮은 주민부담률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인상,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종량제 수수료 및 원천적 감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 금액 인상(조례 제9조제2항 관련 별표2)
 - 현행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 (시장방침

제281호)의 종량제 수수료 통일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인상.

- 자치구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물가 및 지역경제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 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을 실현코자 함.

- 수수료 금액(1*l*,1kg 기준)

	구분	단위	현행	2015년	2017년 5월 1일 부터	비고
가정	종량제 봉투 (단독주택)	1L	60원	70원	100원	
	RFID시스템 (공동주택)	1kg	75원	100원	130원	
영업	납부필증 (소형음식점)	1L	90원	100원	140원	

- 조례 개정시의 수수료 규정 적용일
 - 별표 2 수수료 란의 "2015년" 기준 수수료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까지 적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해마다 상승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일 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9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인상된 음식물류 페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과 부칙에는 적용시기를 단계별로 규정함. ○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종량제 수수료가 기준원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이로 인하여 구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자치구별로 상이한 현행 규격 봉투 가격을 1ℓ기준 현재 60원을 2015년 70원, 2017년 100원으로 2단계에 거쳐 인 상하려는 안이며,

조례에 선반영하여 시기 도래시 자동 인상토록 하여 2017년도까지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수수료를 단일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¹⁾주민부담률이 현재 49.2%에서 2017년 까지 73%로 예상됨.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위주의 정책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낮은 주민부담률과 배출자 부담 원칙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주민 부담률을 높여 감량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인상안으로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한 점은 바람 직하다고 사료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됨.

○ 시행에 앞서 폐기물 감량 및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¹⁾ 주민부담률 : 2015년 현재 49.2%, 2015년 인상 후 59.3%, 2017년 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유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47 호 제출연월일: 2015.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13년 이후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된 후 폐기물처리비가 급상승하여 이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 현실화가 절실한 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낮은 주민부담률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인상,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종량제 수수료 및 원천적 감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금액 인상(조례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 현행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 (시장방침 제281호)의 종량제수수료 통일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인상.
- 자치구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물가 및 지역경제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페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음식물류 페기물의 원천적 감량을 실현코자 함.
- 수수료 금액(1L.1kg 기준)

	구분	단위	현행	2015년	2017년 5월1일부터	비고
가정	종량제 봉투 (단독주택)	1L	60원	70원	100원	
	RFID시스템 (공동주택)	1kg	75원	100원	130원	
영업	납부필증 (소형음식점)	1L	90원	100원	140원	

나. 조례 개정시의 수수료 규정 적용일

○ 별표 2 수수료 란의 "2015년" 기준 수수료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12.26.~2015.1.15,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수수료 란의 "2015년" 기준 수수료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 н	단위	수수료		수집 ·	41 -1 11			
구 분		2015년	2017년 5월 1일부터	수집· 운반비	처리비	비고		
	1 ℓ	70원	100원					
	2 ℓ	140원	190원					
	3 ℓ	210원	300원			※ 판매수수료 :		
부피형 종량제	5 <i>l</i>	350원	500원			수수료(가격)에		
	10ℓ	700원	1,000원	ر ا	المراد ما ما	포함		
	20ℓ	1,400원	2,000원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대행				
	100ℓ	7,000원	10,000원		의 별도 으로			
무게형 종량제	kg당	100원	130원		<u>-</u> 도 난다.	※ 김장철 등 음식물류 페기물 다랑배출 사가는 20ℓ, 100ℓ의부피형 종량 제 봉투 사용가능		
일반음식업소 및 상가	kg당	130원	190원					
(다량배출사업 장 제외)	ℓ당	100원	140원					
다량배출사업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비고: "2015년" 기준 수수료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라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음식물류 페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단위	수수료	수집・운반 경리	 비고 	구 분	단위	수 2015년	수료 2017년 5월 1일부터	수집· 처음 수집	비고
	1 ℓ	60원				1 ℓ	70원	100원		
	21	120원				2 ℓ	140원	190원		
	31	180원		※ 판 배수로 :		3 ℓ	210원	300원		※ 관 바수로 :
부피형 종량제	5ℓ	300원		수수료(가격)	부피형 종량제	5ℓ	350원	500원		수수료(가격) 에 포함
	10ℓ	600원		에 포함		10ℓ	700원	1,000원	수집 . 운반 비와 처리비는	
	201	1,200원	수집·원비와 차라는 대항체원의 발도계원로 정한다.			20ℓ	1,400원	2,000원		
	100ℓ	6,000원				100ℓ	7,000원	10,000원		
무게형 종량제	kg 당	75원		ㅁㅋㄹ!!~!٧ !ㄹ	무게형 	kg당	100원	130원	대행 업체와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감상철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랑배출 사계 는 20ℓ, 100ℓ의 부피형 종랑제 봉투 사용가능
일반음 식업소 및 상가 (다랑배	kg 당	114원			일반음식 업소 및 상가 (다량배 출사업장 제외)	kg당	130원	190원	-	
출시업 장 제외)	ℓ당	90원				ℓ당	100원	140원		
다랑배 출사업 장		별도 계약으로 정함			다량배출 사업장					
								≒료는 201 가지 적용힌	5년 5월 1일 남다.]부터